

시설물 유지관리 부담금

1 기본 현황

□ 사업개요

회 계	수도사업특별회계		
사업기간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연례반복		
사업내용	○ 시설물 유지관리 위탁 비용 부담		
사업비 (당해년도)	4,172,000천원	(국비)	(사비)4,172,000천원
		기타 (예산 외) (구비)	(기타)

□ 사업 담당자

실·국	부서명	과 장	팀장	주무관
상수도사업본부	시설관리과	전태호 3146-1501	양해선 3146-1530	김채경 3146-1544

※실국 및 부서명은 예산서 기준으로 작성되어 현재부서와 다를 수 있습니다.

2 예산 설명

□ 예산 총괄

(단위 : 천원, %)

구 분	2023예산액 (A)	2024예산액 (B)	증감 (B-A)	
				(B-A)*100/A
계	(x-) 3,837,000	(x-) 4,172,000	(x-) 335,000	(x-) 9
수선유지비	(x-) 3,837,000	(x-) 4,172,000	(x-) 335,000	(x-) 9

□ 산출근거

과목구분	2024년 예산내역		
수선유지비	○ 상암공동구 4,070,000,000원*1개소	=	407,000천원

과목구분	2024년 예산내역	
	○ 은평공동구 35,500,000원*1개소	= 36,000천원
	○ 상계공동구 664,000,000원*1개소	= 664,000천원
	○ 목동공동구 956,000,000원*1개소	= 956,000천원
	○ 마곡공동구 275,000,000원*1개소	= 275,000천원
	○ 여의도공동구 162,000,000원*1개소	= 163,000천원
	○ 개포공동구 691,000,000원*1개소	= 691,000천원
	○ 가락공동구 697,000,000원*1개소	= 697,000천원
	○ 지하시설물 공동조사비	= 283,000천원

3 사업 설명

□ 사업목적

- 서울시 공동구 내 상수도 시설물 유지관리 부담금 및 상수도관 주변지반 공동조사 대행 부담금 지급

□ 사업근거

-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4조(공동구의 관리비용 등)
 - 서울특별시 공동구 점용료 등 징수조례 제5조(점용료 및 사용료)
-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4조(지하시설물 주변지반 안전점검 등)
 - 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

□ 사업내용

- 위치 :
 - 8개 공동구(여의도, 개포, 가락, 마곡, 상계, 상암, 은평, 목동)
 - 서울시내 500mm이상 상수도관 주변지반
- 규모 :
 - 서울시 내 8개 공동구 39.12km, 상수도 연장 32.4km, 상수도 구경 150~1000mm
 - 상수도관 공동(空同)조사 비용납부 205km(시도119km,구도86km)
- 사업기간 : 2023.1. ~ 12.
- 사업내용 :
 - 공동구 유지관리 부담금 납부

- 상수도관 공동(空同) 조사비용 납부
 - 시도 119km(본부→도로관리과), 구도 86km(사업소→자치구)

○ 총사업비 : 4,172백만원

추진경위

- 공동구 유지관리 부담금
 - 1995. 1. 1. : 공동구 관리업무 대행협약서 체결 및 부담금 지급
 - 2020. 1.30. : 5년 주기로 재 협약
- 공동조사 비용 부담금
 - 2016.1.7. : 「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」 제정
 - 2019.6.5. : 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 (지하시설물 공동조사를 도로관리부서에서 대행)

2024년도 추진일정

(단위 : 천원)

사업추진절차	추진기간	예산집행금액	추진세부내용
계		4,172,000	
공동조사 및 공동구 관리부담금 납부	2024.01~2024.06	2,002,600	2024년 상반기 부담금 납부
공동조사 및 공동구 관리부담금 납부	2024.07~2024.12	2,169,400	2024년 하반기 부담금 납부

4 사업효과

최근 3년 추진실적

2020년도	○ 부담금 납부 및 안전점검 실시
2021년도	○ 부담금 납부 및 안전점검 실시
2022년도	○ 부담금 납부 및 안전점검 실시

향후 기대효과

- 선제적 안전점검을 통한 재난 위험요인 제거

5 최근 3년 결산현황

(단위 : 천원)

연도	최종예산	전년이월	예산변경	예산현액	집행액	차년이월	집행잔액
2020	(x-) 2,909,000	(x-)	(x-)	(x-) 2,909,000	(x-) 2,769,115	(x-)	(x-) 139,885
2021	(x-) 3,994,000	(x-)	(x-)	(x-) 3,994,000	(x-) 3,994,000	(x-)	(x-) 0
2022	(x-) 5,442,000	(x-)	(x-)	(x-) 5,442,000	(x-) 4,601,988	(x-)	(x-) 840,012